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25(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	담당자	·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 ·☎ (044) 201-3425
	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		·과장 이화진, 사무관 박성근 ·☎ (044) 205-383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**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,
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**

- 조선일보(3.25(월))에서 보도한 재산세 상승률은 분석 과정에서 가격대와 무관하게 지역별 평균변동률을 모든 주택에 적용하였고,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.
 - 국토부는 '19년 공시가격 산정 시 중저가 공동주택(전체의 97.9%)의 경우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대부분 평균 변동률 미만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보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하였습니다.
 - 또한,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인상 방지를 위해 세부담 상한*이 있으나 보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, 실제보다 재산세 상승률이 높게 예측된 측면이 있습니다.
- * (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) 공시가 3억 이하: 작년대비 5% 이내 / 3억~6억: 10% 이내 / 6억 초과: 30% 이내
- 이번에 공개한 '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에 의하면 전국 1,339만 호의 공동주택 중 83.4*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**가 적용되면 재산세 상승이 전년 대비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* 보도에서 인용한 지역의 3억 이하 주택 비중은 각각 광주 94.0%, 대구 87.5%, 경기 81.2%

** (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) 공시가 3억 이하: 작년대비 5% 이내 / 3억~6억: 10% 이내 / 6억 초과: 30% 이내

- 한편 올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'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(56.3%)은 작년 (52.6%)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또한, '18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74%는 다주택자이며,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이미 기존에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되므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아울러,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, 고령·장기보유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.

- ◇ (상한)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(재산+종부)부담 상한은 작년대비 50%
- ◇ (감면)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(최대 70%까지 공제)
 - (고령자 세액공제) 60세이상 10%, 65세이상 20%, 70세이상 30%
 - (장기보유 세액공제) 5년이상 20%, 10년이상 40%, 15년 이상 50%

-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유형·지역·가격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, 매일경제 3.25(월).) >

◆ (조선) 서울 집 한 채 재산세, 19.5% 오른다

◆ (매경)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.7배로 급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목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